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홍성룡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의  
자금재원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 신설하여

이번 코로나-19사태 대응에서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대규모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재원  
확보방안을 다양화하는 한편,

‘20.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4.8.)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자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사용용도가 기존 재난계정 자금의 사용용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존 재난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